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신성범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9780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7. 6.

발 의 자 : 신성범 · 엄태영 · 김태호
최은석 · 박성훈 · 이인선
최수진 · 김태규 · 한지아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“대마”란 대마초와 그 수지(樹脂),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,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.

지난 2020년 12월 세계보건기구(WHO)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고위험 마약류에서 제외하였음. 같은 해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.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(헴프) 규제자유특구를 설치하여 THC(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) 함유량이 0.3% 이하인 CBD(칸나비디올)에 대해 합법적으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.

대마의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면서 뇌전증 등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, 마

약류로 일괄하여 규제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.

이에 대마의 성분 중 Hemp(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.3퍼센트 이하인 *Cannabis sativa L*)는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,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4호).

법률 제 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품은”을 “제품 및 헴프(Hemp)[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.3퍼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]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